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4-57호
2024. 9. 13.(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2)

- 사방지 지정 고시(고시 제2024-101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4-102호) 2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52호)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55호) 11

행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전환 행정예고(공고 제2024-947호) 2

공 략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101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정내역: [붙임1] 지정내역 참고
2. 지정사유: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3. 사업종류: 사방사업(계류보전)
4. 지정도면: [붙임2] 지정구역 도면 참고
5. 행위제한: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상서동 833-3	덕암로162번길 40 (상서동)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1,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9. 13.
읍내동 126-2	계족로762번길 151 (읍내동)	건물신축	계족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7,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9. 13.
덕암동 43-2	덕암로 229 (덕암동)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덕암동)을 반영	2024. 9. 1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및 예고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61, FAX : 042-608-3811, E-mail : lmseon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이명선(전화
: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전
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
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실
·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심사 의뢰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는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 또는 관련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훈령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예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3. 주요내용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실·과·직속기관·사업소(전화 : 042-000-0000, FAX:042-000-0000, E-Mail : 000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 담당자 ○○○(전화 : 042-000-0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9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규정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전화 : 042-608-5223, FAX : 042-608-3844, E-mail : whdaud100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담당자 장종명 (전화 : 042-608-5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호안(기슭·독 침식 방지시설)·건축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 ³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 ³ 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text{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3. 흙·돌·모래·자갈 또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대진

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광역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

-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대덕구 및 대전광역시 다른 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대전광역시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구청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6. 22., 2015. 7. 24.,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1. 11. 3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구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구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전문개정 2020. 9. 8.]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2. 28.>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

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⑤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2. 28.>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전환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주차장 일부(1면) 전환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행정예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전환
- 2. 행정예고 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주차장 일부 전환(사유: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1면 조성) 추진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예고대상**

전 환 내 용	전환면수
(전 환 위 치) 대덕구 법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 공영주차장 (거점주차시간) 주간: 15:00 ~ 17:00 야간: 21:00 ~ 01:00(익일) ※ 거점 중 신고출동, 관내 순찰 등 유동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며, 이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의 주차를 허용함	1면

- 4. 관련근거**
 - 가. 「주차장법」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제13조의5(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5.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s://www.daedeok.go.kr>)
-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9. 13.(금) ~ 2024. 10. 4.(금) (22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 (FAX: 042-608-3845, 메일: hilary12@korea.kr)
-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 마. 제출기일: 2024. 9. 13.(금) ~ 2024. 10. 4.(금)
-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품)]

끝.